노사상생센터
궁금하거나, 불편할 땐 노사상생센터로!

2020년 7월 3주차
264호

휴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II

kt·kt노동조합

Q1.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A. ERP-휴가 메뉴에서 복무유형은 청원휴가, 휴가유형은 난임휴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해에 총 3일(최초 1일 유급, 2일은 무급)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2. 태아검진 휴가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배우자도 사용 가능한가요?

A. 태아검진 청원휴가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부여한 청원휴가(월 1일, 유급)로, 임신한 여성만 사용 가능합니다.

Q3. 가족돌봄휴가는 어떤때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가족돌봄휴가(연 10일, 무급)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양육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가족의 범위로는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 까지 해당됩니다. 신청 시 진단서(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도 가능)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Q4. 내년에 근속 20년차로, 안식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총 며칠을 쉴 수 있는지와 별도의 신청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근속 20년차의 경우 안식년휴가 8일+개인연차휴가 7일을 사용하여 총 15일이나, 워킹데이만 적용하므로 약 3주 정도를 쉬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RP 휴가 신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대상자에게만 '안식년휴가' 메뉴 보임)

Q5. 리프레시 휴직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신청시기는 매년 2월/8월이며, 문서가 공고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소속별 인사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도는 각 소속 인사위원회가 신청동기,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노사상생센터 접수 채널
kate > KT119 노사상생센터
kt119@kt.com
080-2580-119
1588-4936(문자)